

# 대관관리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의 장소 및 시설 설비의 대여에 따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.

**제2조 (대관의 정의)** ① “대관”이라 함은 행사나 연습, 녹음, 녹화 등을 위하여 장소, 시설,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수 행위를 위하여 장소,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대관승인을 받아 본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사용 신청을 필한자를 말한다.

③ 본 대학교는 대관, 시설 설비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
**제3조 (대관의 범위)**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행사, 공연 및 이에 상응되는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.

**제4조 (대관료)** ①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, 시설유지비,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다. 단, 대관료는 별표1과 같다. <개정 2009. 7. 1.>

② 대관의 대관자는 기본시설 대관료의 3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본 대학교가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장권 검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 사용료 및 부대설비사용료는 공연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연습대관과 부대시설 사용시 대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.

④ 본 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이나 본 대학교가 후원하는 공연, 본 대학교 재학생(수업 연장) 또는 기획대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(감면대상에서 부대사용료는 제외).<개정 2017.11.4.>

1. 본 대학교 교수가 지도하는 재학생 4인 이상의 연주 시 수업의 연장으로 본다.
2. 재학생 및 졸업생, 교직원 직계행사(결혼식) 시 50%의 대관료를 감면한다. <개정 2009. 7. 1.>
3. 본 대학교 교단의 교회행사 시 50%의 대관료를 감면한다.
4. 서울신학대학교 후원회원은 예우혜택에 준하여 대관료를 감면한다.
5. 총장이 승인하는 본 대학교 홍보와 관련된 행사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6. 대관행사 홍보물(팸플렛, 포스터, 프랑카드 등)에 본 대학교의 입시 및 홍보자료를 게재하는 경우(본대학과 합의 후) 40%이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7. 본 대학교 협정기관 행사시 40% 이내에서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7. 1.>

⑤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대학교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(100%반환)

2. 본 대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(100%반환)
  3. 기타 대관자가 단체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본 대학교의 승인을 얻은 경우(50%반환)
  4. 연습실 및 부대설비 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신청을 한 경우(100%반환)
- ⑥ 본 대학교는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5조 (대관 시간)** ① 성결인의집 대강당 및 존토마스홀, 소강당, 성봉강당, 본관 소강당, 우석강당 공연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1일 2회 이상의 공연을 할 경우 또는 낮 공연만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본 대학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② 1일 2회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연습시간은 반드시 본 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야외 대관 시 원칙적으로 일몰 후 대관은 금한다.

**제6조 (대관신청)** ① 제3조의 시설, 설비를 대관 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대관신청서(인터넷작성-별표 2)와 공연 시 공연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공연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본 대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대관신청 가능 기간은 대관일로부터 최소 14일 이내, 최대 당해 학기 내로 정한다.
- ③ 학기 중 아래와 같은 기간에는 대관을 금한다.
  1. 개강일로부터 수강신청변경기간
  2. 종강일로부터 보강기간종료일까지
- ④ 3회 이상의 연속적인 행사는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하며 원칙적으로 주일 대관을 하지 않는다. 단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대학과 협의 한다.

**제7조 (대관승인)**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(이하 "대관자"라고 한다)는 대관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본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단 일반적 대관 시 대관신청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.

- ② 본 대학교는 대관신청 결과를 대관자에게 결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본 대학교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④ 본 대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업으로 인정 되는 학사와 배치되었을 때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할 수 있고 취소 변경 시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대관승인 기준)** 총무처(관리) 과장 전결(필요시 총무처장 전결)로 사용 목적,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관을 승인하며 필요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  
<개정 2017.11.4.>

(예) 이단시비시 - 교역처, 정책시비시 - 정책결정부서 또는 기획위원회 등

**제9조 (대관 신청 제한, 신청자격 중지)** 대관 신청자가 다음 각 호1에 해당될 경우 대

관을 제한하거나 중지 할수 있다.

- ① 법령에 위반되는 공연일 경우
- ② 시설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본 대학교 공연 대관규정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지 1년 미만인 경우
- ④ 이단종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인 경우
- ⑤ 안전시설 미비 시 2차례 경고 후 시정치 않을 경우

**제10조** (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)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

**제11조** (대관내용 임의변경금지)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대관행사 내용및 일자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. 다만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 대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본 대학교는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- ②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본 대학교가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.

**제12조** (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) ① 대관자는 시설,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, 설치할 경우 본 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공연장의 설치, 관객정리, 안내, 접수 등에 필요한 인원은 본 대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대관자는 부대 및 객석내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.

**제13조** (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)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-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대관자는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,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련 필요 인원을 교육·배치하며, 공연 전 관객에게 대피로 안내 및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.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<개정 2017.11.4.>
- ④ 대관자는 부속시설 파손 시 학교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⑤ 본 대학교는 대관기간 중(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)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본 대학교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.
- ⑥ 대관자는 본 대학교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본 대학교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관자는 본 대학교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⑦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공연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14조** (행사 및 공연 홍보물) ① 관람자의 준수사항을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.
- ②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신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.
  - ③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.
  - ④ 위 1, 2, 3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. 본 대학교가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져야 하며, 본 대학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  - ⑤ 정원의 2%는 본대학교의 유보 좌석으로 하여야한다.
  - ⑥ 입장권을 포함한, 포스터 게시, 프로그램 및 물품진열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제15조** (대관 행사 시 주의사항) ①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위험 또는 불결한 물품의 반입이나 관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.
  - ③ 화환, 화분, 꽃다발 등은 무대 반입을 금한다.
  - ④ 응급 시 본 대학교 담당에게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제16조** (공연진행의 정의) '공연진행'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제반진행사항을 말한다.
- 제17조** (공연 진행 협조) 대관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야 한다.
- ①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.
  - ② 청소, 냉난방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 책임은 본 대학교 담당자가 진다.
  - ③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본 대학교 담당자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하며,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자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.
  - ④ 대관자는 본 대학교에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20부와 포스터 5장을 학교에 공연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(공연진행용 프로그램 15부, 보관용 프로그램 5부, 포스터 5장)
- 제18조** (규정의 효력) 본 규정은 본 대학교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- 제19조** (항변권) 본 대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.
- ①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생일시로부터 30일전 이의를 서면 통고하여야 한다.
  - ② 본 대학교는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20조** (규약변경 승인 등) ① 이 규정을 변경할 경우 본 대학교와 대관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,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이의를 본 대학교에 서면접수하며,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제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.
- 제21조** (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관례가 준한다.
- 제22조** (관할법원)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관할 법원은 본 대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**제23조** (규약위반시의 책임)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- ① (개정) 이 규정의 개폐는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제정으로 종전의 “성결인의 집 대관 관리규정”은 폐기 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우석 영빈실과 학생 생활관은 규정에 따른다.
- ④ (시행) 이 규정은 2009년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규정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규정은 2017년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건물및 시설		대 관 료(4시간)	초과시간(1시간)	부대시설
성결인의 집	대 강 당	800,000원 냉난방비포함	90,000원	-피아노 150,000원 -파이프오르간 350,000원 -영상(전광판) 200,000원 -음향 1단계-200,000원 2단계-500,000원 (*기본음향제공시 제외)
	존토마스홀	450,000원 냉난방비포함	90,000원	-피아노(가와이) 100,000원 -빔프로젝터 50,000원
	강의실(대)	40,000원	10,000원	빔프로젝터 10,000원
	강의실(소)	30,000원	10,000원	
본관	소 강 당	200,000원 냉난방비포함	30,000원	
	강의실(대)	40,000원	10,000원	
	강의실(소)	30,000원	10,000원	
	컴퓨터실	320,000원	50,000원	
대학원	성 봉강 당	200,000원 냉난방비포함	30,000원	
	강의실(대)	40,000원	10,000원	
	강의실(소)	30,000원	10,000원	
교육복지센터	강의실(대)	40,000원	10,000원	
	강의실(소)	30,000원	10,000원	
우석	강 당	200,000원 냉난방비포함	30,000원	
	강의실(대)	40,000원	10,000원	
	강의실(소)	30,000원	10,000원	
백주년	강 당	200,000원	30,000원	
	강의실(대)	40,000원	10,000원	
생활관	기숙사(1박)	30,000원	* 재학생의 방중입사는 생활관과 협의 후 총장결재로 진행	
운동시설	풋 살 장	60,000원	10,000원	
	농 구 장	40,000원	10,000원	
	운 동 장	40,000원	10,000원	
	기타 야외		1명 / 1천원	
* 대관시간은 기본 4시간을 기준한다.				

[별 표2]

종합정보시스템 | 학사관리 | 행정관리 | 공동관리 | 그룹웨어 | 전자출결

공지사항 \* 대관신청 \* X

대관신청

시설시스템 > 대관관리

대관신청장소목록 [이]

No	대관신청 장소명	대관 시작일자	대관 종료일자	시작시간	종료시간	매주요일	기본대관료 (4시간)	추가대관료 (매 1시간 초과)
1	1층 본관/102호/소강당						230	보기 현황보기
2	2층 본관/201호/본관 강의실						90	보기 현황보기
3	2층 본관/203호/본관 강의실						95	보기 현황보기
4	2층 본관/205호/컴퓨터실습실						53	보기 현황보기
5	2층 본관/206호/컴퓨터실습실						30	보기 현황보기
6	3층 본관/302호/본관 강의실						96	보기 현황보기
7	3층 본관/303호/본관 강의실						103	보기 현황보기
8	3층 본관/304호/본관 강의실						104	보기 현황보기
9	3층 본관/305호/본관 강의실						139	보기 현황보기
10	3층 본관/306호/본관 강의실						83	보기 현황보기
11	3층 본관/306호/멀티미디어실						38	보기 현황보기
12	3층 본관/309호/본관 강의실						44	보기 현황보기
13	3층 본관/310호/본관 강의실						84	보기 현황보기
14	3층 본관/311호/본관 강의실						45	보기 현황보기
15	3층 본관/312호/본관 강의실						85	보기 현황보기
16	3층 본관/313호/교원양성원기억실습실						31	보기 현황보기
17	3층 본관/315호/교원양성원가동작실습실						41	보기 현황보기
18	2층 영현기념관/201호/사북과실습실						32	보기 현황보기

부대 시설목록 ※부대 시설은 사용할 경우에만 선택해 주세요

No	장소명	부대시설명	사용료(원)	사용상태

대관신청정보

신청일자: 2017-07-17 | 학과/부서: 총무처(관리) | 신청자: 허준 | 신청자전화번호: 010-6608-8079 | 신청자Email: jheodstu.ac.kr | 안내문보기 | 동의(대부확인)

단체명: | 사용자번호: | 예산인원(명): | 행사명: | 첨부서류: | 첨부

대관료(원): | 대관료계산: [ 대관료계산식: 대관사용료 + 부대시설사용료 ]

사용목적: | 기타사항: |